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11. 9. . (제 회)	

고령군의회의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

제출자	박정현 의원 외 6명
제출연월일	2011. 9. .

고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11. 9. .

발 의 자 : 박정현 의원 외 6인

1. 제안이유

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의2 제3항 및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조례안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안 예고의 방법, 절차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

-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: 5일이상 가능(안 제19조의2제1항)
- 의견제출자 의견 반영여부 서면통보(안 제19조의2제5항)

나.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

- 주민청구 조례안 의결전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의견청취
(안 제52조제4항)

3. 관련 법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의2
-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

4. 일부개정규칙안 : 붙임

고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고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조례안예고)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·주요 내용·전문을 군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·법인 또는 기관·단체 등(이하 “의견제출자”라 한다)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.

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제25조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본회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을 직접 심사할 때에는 제58조제4항에 따른다.

제5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위원회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그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(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·답변을 포함한다)를 들을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<u>제19조의2(조례안예고)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·주요 내용·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·법인 또는 기관·단체 등(이하 “의견제출자”라 한다)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</u></p> <p><u>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.</u></p> <p><u>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5조(안전 심의) ①~④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⑤ (생략)</p> <p>제52조(위원회의 심사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제25조(안전 심의) ①~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본회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을 직접 심사할 때에는 제58조제4항에 따른다.</u> 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</p> <p>제52조(위원회의 심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위원회는 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그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(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·답변을 포함한다)를 들을 수 있다.</u></p>

관계 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 (개정 2011. 7. 14) ⇒ 신설

제15조의2(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15조 제9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.

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(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·답변을 포함한다)를 들을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제66조의2(조례안예고)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·주요 내용·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.

② 조례안예고의 방법,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의회사무과	
연 락 처	(054) 950 - 6404